

신고자료 경정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신청사항 (✓표시)	☐ 참여기간		☐ 참여사업명		☐ 발주자		☐ 직무분야		☐ 전문분야	
	☐ 공사종류		☐ 담당업무		☐ 공 법		☐ 직 위		☐ 기 타	
관련증빙 자료(✓표시)	☐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경력확인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국외 경력확인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경력확인서 또는 국외 경력확인서 확인업체의 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가 신고된 경우 제외)									
	☐ 기 타 :									
건설기술 경력증 미반납 사유										
수신요청	☐ 자택전화 ☐ 회사전화 ☐ 휴대전화 ☐ 문자(휴대전화) ☐ 전자우편 ☐ 문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자료 경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본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OOOOOO 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관련증빙 자료					수수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인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설기술인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후 직접 제출하거나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제출 시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3. 대리인 신청 또는 우편신청 시 본인 신청 사실여부 확인 후 접수 처리됩니다.										
4. 경정결과에 따라 등급이 재산정되어 변동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않은 경력증의 부정사용(분야변경 또는 등급하락 이전 경력증의 사용을 말합니다) · 대여(자격 또는 경력증) · 도용 또는 거짓신고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리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서명 또는 인)									